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동의안

의 안 번 호	1602

제출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하수처리과정의 일부시설물(제1·2건조, 분뇨, 탈수)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하수도법」 제19조의2,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관리대행하고자 하며,

나. 현재의 일부시설물(제1건조, 분뇨, 탈수) 관리대행과 제2건조시설(증설) 관리대행을 통합하여 1개의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위탁시설 관리대행현황

구 분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건조시설(증설) 관리대행
대행기간	2018.2.1. ~ 2020.12.31.	2019.12.2. ~ 2020.12.31.
대행시설	제1건조(300톤/일), 분뇨(4,000㎘/일) 탈수시설(555㎥/hr)	제2건조(350톤/일)
대행비용 (비정산비)	4,043백만원(총차 9,325백만원)	1,199백만원(총차 1,234백만원)
운영인력	56명	17명
대행업체	대양엔바이오(주)	대양엔바이오(주)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위탁 추진근거

가) 「하수도법」 제19조의2

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다)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2) 위탁 추진방침

가) 난지 · 중랑물재생센터 조직 효율화계획(조직담당관-10707호, 2008.9.12. 시장 방침)

나) 난지 · 중랑물재생센터 민간위탁(부분) 추진계획(물재생시설과-11968호, 2008.10.20. 행정2부시장 방침)

다) 중랑물재생센터 부분위탁시설 확대계획(물재생시설과-11473호, 2014.9.11. 도시안전실장 방침)

라) 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시설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5696호, 2018.8.9. 국장 방침)

마) 중랑물재생센터 차기(2021~2023)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추진계획(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2236호, 2020.4.14.)

3) 위탁 추진 필요성

일부시설물(제1건조, 분뇨, 탈수) 관리대행은 2003년, 제2건조시설(증설) 관리대행은 2019년 12월부터 민간위탁 중으로 운영인력 절대 부족, 슬러지처리공정 운영관리의 안정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대행을 추진하고자 함.

※ 위탁시설 관리대행 경과

○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구분	대행기간	수탁기관	계약방법	대행시설	비 고
1차	'03.1~'05.12	한솔이엠이	의무운전	건조	
2차	'06.1~'08.12.	한솔이엠이	재위탁 (공개모집)	건조	
3차	'09.1~'11.12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재위탁 (공개모집)	건조, 분뇨	분뇨 추가 ('09.1.1.)
4차	'12.1~'14.12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재위탁 (공개모집)	건조, 분뇨	
5차	'15.1~'18.1	환경관리(주)	재위탁 (공개모집)	건조, 분뇨, 탈수	탈수 추가 ('16.7.1.)
6차	'18.2~'20.12	대양엔바이오(주)	재위탁 (공개모집)	건조, 분뇨, 탈수	

○ 제2건조시설(증설) 관리대행

구분	대행기간	수탁기관	계약방법	대행시설	비 고
1차	'19.12.~'20.12	대양엔바이오(주)	신규 (수의협약)	제2건조 (증설)	최초 위탁

다. 위탁시설 개요

1)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2) 위탁시설 : 중랑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제1 · 2건조, 분뇨, 탈수)

3) 시설규모 : 제1건조(300톤/일), 제2건조(350톤/일), 분뇨(4,000㎘/일), 탈수(555㎥/hr, 탈수기17대)

4) 위탁기간 : 3년(2021년 1월~2023년 12월)

※ 서울시 방침 및 제도변경 등으로 중랑물재생센터 공단전환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변경

5) 위탁사무

가) 일부시설물(제1 · 2건조, 분뇨, 탈수) 운영

나) 관리대행 시설의 설비 유지관리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다) 방류수질 향상을 위한 관리대행 시설의 공정효율화 도모

라) 운영 조건별 운영인자 및 운영자료 정리 · 보고에 관한 사항

6) 위치도

라.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1) 위탁기간 소요예산

구분	예산(천원)	예산과목	예산 세부 내역(천원)
2021년	12,852,599	민간위탁금	비정산비(인건비 등) 6,354,758 정산비(수선유지비, 약품비 등) 6,497,841
2022년	13,300,556	민간위탁금	비정산비(인건비 등) 6,607,780 정산비(수선유지비, 약품비 등) 6,692,776
2023년	13,764,553	민간위탁금	비정산비(인건비 등) 6,870,994 정산비(수선유지비, 약품비 등) 6,893,559

※ 비정산비 : 소요인력 및 위탁비용 산정용역 결과

정 산 비 : 물가상승률(3%) 반영

2) 2021년 소요예산 산출내역

구 분		2021년 예산(천원)	비 고
비정산비	① 인 건 비	4,609,715	용역결과
	② 복리후생비	162,586	
	③ 기타경비	45,925	
	④ 일반관리비	433,640	
	⑤ 이 윤	525,187	
	⑥ 부가가치세	577,705	
	계	6,354,758	
정산비	⑦ 수선유지비	2,581,603	물가 상승률 반영
	⑧ 약 품 비	2,519,776	
	⑨ 연 료 비	1,082	
	⑩ 검사 및 분석수수료	141,686	
	⑪ 일반관리비	412,646	
	⑫ 이 윤	258,160	
	⑬ 부가가치세	582,888	
	계	6,497,841	
합 계		12,852,599	

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 ·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2.「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관리 ·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물재생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하여 물재생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 운영을 하수도법령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능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신정현(☎ 2211-2580)